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·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윤 유 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0-12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0년 2월 일

발 의 자: 윤유선, 이충현, 경기문, 황영호
송순호, 송영섭, 신낙형, 김성한
이종숙, 최동철, 이충숙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·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·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인 ‘어린이·청소년 의회’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민주시민으로서 소양 함양이라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·청소년 의회의 운영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. (안 제1조)
- 나. 어린이·청소년, 어린이·청소년 의회에 대하여 정의함.(안 제2조)
- 다.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- 라. 어린이·청소년 의회 프로그램과 일정에 대한 홍보 및 안내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4조)
- 마. 어린이·청소년 의회 인원구성 및 수요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.(안 제5조)

바. 어린이·청소년 의회 운영 및 장소제공 등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6조)

사. 어린이·청소년 의회 참여자에 대한 수수료 수여에 대하여 규정함.
(안 제7조)

아.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.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 없음

나. 협조부서: 의회사무국

다. 입법예고: 2020. 2. 예정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·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·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·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·청소년”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어린이·청소년 의회”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어린이·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어린이·청소년 의회 운영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어린이·청소년 의회 운영의 추진방향
2. 어린이·청소년 의회의 일정,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의장은 당해 연도 3월까지 어린이·청소년 의회의 연간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.

제4조(홍보 등)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과 일정을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관내 학교장 등에게 공지되도록 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과 별도로, 필요시 어린이·청소년 의회 관련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구성 등) ① 어린이·청소년 의회는 1회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의장은 어린이·청소년 의회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 및 장소제공 등) ① 의장은 어린이·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어린이·청소년 의회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7조(수료증) 의장은 어린이·청소년 의회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